

- 지역사회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감면 지침

경기도의료원은 출산 장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직원가족을 만들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6개병원이 통일된 감면률을 적용함으로써 동질감과 지역사회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침을 마련함.



경기도의료원

(의료협력팀)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감면 지침

시행 및 제정	2010.08.01
제1차 개정	2010.12.
제2차 개정	2011.12.
제3차 개정	2012.04.
제4차 개정	2012.08.
제5차 개정	2013.07.
제6차 개정	2013.12.
제7차 개정	2014.09.
제8차 개정	2015.09.
제9차 개정	2016.01.
제10차 개정	2017.06.
제11차 개정	2019.08.
제12차 개정	2020.06
제13차 개정	2020.07
제14차 개정	2020.10
제15차 개정	2021.01
제16차 개정	2021.03
제17차 개정	2023.02
제18차 개정	2023.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료원 분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와 장례식장 이용내역 감면에 대해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된 지침적용을 통한 감면을 적용으로 각 분원을 이용하는 직원가족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경기도의료원의 신뢰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제2조(근거 자료) 통일된 지침 마련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료원 단체 협약
2. 경기도 등 외부기관의 요청(협약 등)
3. 경기도의료원 각 분원 원무과장 회의 결과(개정 '17.6.9)

제3조(적용범위) 진료비와 장례식장 이용비용에 한한다.

제4조(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세부내용) 「별첨1」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률 세부내용에

의한다.(개정 '23.05.08)

제5조(장례식장 이용비용 감면 세부내용) 「별첨2」의 장례식장 이용비용 감면률 세부내용에 의한다.
(기존지침 보완 '23.02.15)

제6조(지침의 변경 등) 본 지침에 명시된 대상자 외에 대상자를 추가 혹은 삭제하거나 지원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의료원장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17.6.9)

제7조(비감면 항목의 지원)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비감면 항목의 진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인정하는 경우 각 병원 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병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별첨 1에서 명시한 영역)(개정 '21.03.08)

제8조(심의위원회) ① 각 병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감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17.6.9)

1.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률 세부내용에 명시된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등의 지원사항(**기존 지침 보완 '23.05.08**)

2. 장례식장 등 비용에 관한 사항(기존지침 보완 '23.02.15)

3. 의료수가 관리규정, 제7조(제요금의 감면), 1항. (국가유공자, 지역소외계층 등 사회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대상자의 심의 의결(개정 '20.6.1)

4.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료부장이 되고 원무과장, 행정과장, 공공사업과장, 관련 임상과장 등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12.8.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2.8.10)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병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다만, 병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2.8.10)

제9조(운영위원회)¹⁾

1. 구성 및 운영 : 의료협력팀장, 본원의 원무과장,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기관 지원팀장, 노조지부장(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협력 팀장이 된다.(개정 '20.6.1)

2. 의결정족수 : 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개정 '20.6.1)

3. 출석 : 원무과장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의 5급이 출석을 대리할 수 있다.

1) 제2차 개정(2020.06.01)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의료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보칙) 분원은 장기 근무 간병인력의 감면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감면하는 비급여 부분에서 간병료는 제외한다.

제 3조(지원)²⁾ 다자녀가정(아이플러스카드), 가정폭력피해자, 위기청소년무료진료, 청소년 문화의 집, 다문화가정 분만비, 국제결혼 이주여성건강검진유소견자(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후 의뢰 유소견자 및 질환자), 노숙자(외국인 무료진료 적용 대상자 제외), 성폭력피해자의 한도 초과액, 경기도의료원 규정집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제요금의 감면)에 감면액은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사업으로 추가 투입되는 경상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별첨1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한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근거자료를 반드시 남기도록 한다.(기존 지침 보완 '23.05.08)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의료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4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2010.12.)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5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1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율 세부내용

구분	근거자료	범위	감면율	비고
직원	경기도의료원 단체협약 제10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본인과 배우자 -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개정 '15.09.15)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50%</p>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단, 종합검진비 30%</p>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개정 '23.2.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증명, 백신 접종 포함 - 직계 존비속(개정 '15.9.15) 직원 건강보험증에 등재자는 보험증만으로 확인 그 외 가족은 직원의 재직증명서(산하 다른 병원 이용 시)와 가족관계증명서(확인서) 제출 - 종합검진비 이외 건강보험공단검진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해 50%(비급여 포함) 감면 (개정 '23.2.15)
공중보건의	직원으로 분류	상동	상동	- 상동 / 삭제(개정 '14.09.30)
과건직원 (개정 '14.09.30)		본인	상동	- 본원 및 병원에서 상주하는 수련의 및 과건직원 (개정 '14.09.30)
위탁 사업 근무자	건강보험 가입사업장이 본원인 경우	본인	상동	- 본원 및 병원에서 협약체결 후 근무하는 위탁사업 근무자 (개정 '14.09.30)
	건강보험 가입사업장이 본원이 아닌 경우	본인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직원에 준함</p>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치과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병원의 윈스톱센터 경찰관, 이동진료팀의 공중보건의, BTL, 새로운 경기도립 정신병원,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위수탁 사업기관, 경기도 위탁 산후조리원 - 삭제(개정 '14.09.30)
사회복무요원	본원 근무자	본인	50%	
	경기도 관내 근무자	<p style="color: blue; font-weight: bold;">본인</p>	외래 20%, 입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전용사 기준 - 사회복지확인증으로 신분 확인
병역명문가	상동	본인과 본인의 직계존비속 (개정 '14.9.30)	외래 20%, 입원 10%	- 병역명문가증 및 가족관계확인서 제시

구분	근거자료	범위	감면율	비고
퇴직자	삭제(개정 '15.09.15)	삭제(개정 '15.09.15)	삭제(개정 '15.09.15)	- 삭제(개정 '15.09.15)
자원봉사자	경기도의료원(개정'14.09.30) 자원봉사관리운영지침	별도	별도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에 따른 지원
	경기도 자치행정과 -3408(12.02.22)호 관련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용 10%	- 우수 자원봉사자 증 소지자(신설 '12.08.10)
	병원 내 자원봉사자	본인	급여+비급여 포함 20% 본인부담금의 20% (신설 '20.07.01)	- 봉사활동 누적시간 전년도 100시간 이상 시행 자 (신규봉사자 80시간 이상) - 봉사활동 3개월 이상 공백, 제외 - 개인의 건강상 이유 및 병원 사정에 의한 공백시 예외 (신설 '20.07.01)
용역업체 직원		본인	50% (치과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본원 및 병원에서 계약체결 후 상시 근무하는 용역업체 근무자 - 간병인력은 이 범위에서 제외. 다만 장기근무자의 경우 병원별 자체 규정에 의함. (개정 2023.05.08)
다자녀가정 감면	다자녀가정 공공기관 이용료 감면(복지정책과-11540) 다자녀가정 지원혜택 확대계획 협조요청 (공공기관담당관-5390 (2023.04.07.))	부모와 자녀	30%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확인서) 제출 - I-Plus card 소지자 (2자녀이상 가정에 한함) - <u>막내 나이 만 15세 미만에 한함(신설)</u> (개정 2023.06.01)
가정폭력피해자	전국의료원연합회 - 여성가족부 협약체결 2013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지원 공동협약에 따른 학대 아동에 대한 진료비 감면 (신설 '21.03.08)	기관 의뢰대상자	100%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치료에 한함 (개정 '21.03.08),
위기청소년무료진료	전국의료원연합회 - 청소년위원회 협약체결	기관 의뢰대상자	급여 100%, 비급여 50%	-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

구분	근거자료	범위	감면율	비고
청소년문화의 집		기관 의뢰대상자	100%	-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 -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
외국인노동자 카드		삭제	삭제	-삭제(개정 '17.06.09)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2016.01.26.) 공문 • 종합병원(2차) : 의료보험 수가 100% 적용 후 20% 감면 → 의료보험 수가 100%적용
원내 감면	경기도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제7조(제요금의 감면)	병원장의 승인을 득한 본인부담금 감면액		지역주민, 노숙자, 외국인 등의 무료진료와 같이 사회공익 상 필요한 사항(의료수가관리규정 개정 '21.01)
국가 유공자 및 고엽제	국가유공자 치과보철료 감면 건 (경수의 원무01, '01.03.20)	본인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의 30%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17.06.09)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23.2.15)
고엽제		삭제	삭제	-삭제 (개정 '23.2.15)
치과이용자	-경기도의료원·이주대학교의료원 협약 (11.8.17) -2012년 중증장애인 전문치과 진료 사업비 지원(도비) -치과진료사업 관리운영지침 개정 공포 (2015.06.01.) (개정 '15.09.15)	삭제	삭제	- <u>중증장애인치과 관리운영 지침에 준한다.</u> 삭제(개정 '17.06.09)
				1) 1~4급 장애인 본인 2) 수급자(1,2종), 차상위저소득 하위 20% 이하의 지적·뇌병변·정신장애 각 1~2급, 자폐성 장애 1~3급 장애인 및 지체장애 1~2급 (개정 '15.09.15)

구분	근거자료	범위	감면율	비고
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기관		협약기관 재직직원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종합건강검진비용 10%	- (제정 '12.04.09)
		협약기관 재직 직원	산업특수검진비용 10%	
노숙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 계층 무료진료 미해당자)		기관 및 분원 의뢰대상자	100%	-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경상보조금) - 건강검진,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제외 - 수원 역전 무료진료 제외(진료 후 연계는 적용)
만성질환관리 교육·상담료	만성질환사업담당자회의결과 (2013.07.15)	만성질환(당뇨·고혈압) 관리 대상자 본인	교육·상담료 100%	- 감면액은 경기도의료원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신설 '13.07.22)
양해각서(MOU) 체결기관	양해각서	기관별 협약내용 적용	기관별 협약내용 적용	- 감면액은 경기도의료원 예산범위내 지원가능(경기도 의료원간 양해각서 체결 기관에 한함)(개정 '13.12.09)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제외(개정 '19.08.01)
참전용사 (신설 '14.09.30)	보훈청과 참전용사 우대진료 협약	본인	외래 20%, 입원 10% (비급여제외) (개정 '15.09.15)	- 75세미만 참전 용사만 해당 - 참전용사증 제시로 감면 대상 확인
경기도 내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시설) 연합회	도·도 장애인 복지(단체·시설)연합회 협약체결	장애인 본인 및 연합회 재직 직원 본인	종합건강검진비용 30%	- (신설 '14.09.30)
장애인 (신설 '14.09.30)	상 동	도·도 장애인 복지(단체·시설)연합회 추천대상자	입원 본인부담금의 100%	- 도 장애인 복지(단체·시설)연합회 추천 연간 10명 지원
의사상자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공포 (2020.01.13.)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 자	본인부담금의 20%	- 건강검진 제외 - 의사상자 등록카드로 본인 확인
성실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2021년 예정)	경기도 성실납세자 (단, 유효기간내)	- 개인 종합검진비 20% 할인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신설 '21.01.01), (개정 2023.05.08)

<p>원자폭탄 피해자</p>	<p>「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제3조, 제4조</p>	<p>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p>	<p>50% 종합검진비 50% 할인,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지원</p>	<p>(신설 '21.03.08)</p>
---------------------	---	---	--	-----------------------

장례식장이용비용감면율세부내용

구분	근거자료	범위	감면율	비고
직원	경기도의료원 단체협약 제103조	본인	50%	- 시설사용료(안치료+접객실사용료), 장례용품, 연습료에 한해 적용(영정꽃 제외) (개정 '19.08.01)
직원가족	경기도의료원 단체협약 제103조	-직원 배우자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개정 '15.09.15)	50%	- 시설사용료(안치료+접객실사용료), 장례용품, 연습료에 한해 적용(영정꽃 제외) (개정 '19.08.01) - 직계 존비속은 재직증명서(산하 다른 병원 이용 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으로 확인 (개정 '15.09.15)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1.03.08)	본인(고인)	30%	- 시설사용료(안치료+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영정꽃 제외) (개정 '19.08.01)
무연고자, 변사체		기관지원금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감면으로 처리		- 공공병원의 역할에 충실(개정 '17.06.09)
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기관		협약기관 재직직원 및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10%	- (제정 '12.04.09) - 연습료 포함 - 음식 및 재료비 제외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와 MOU 체결(2011.05.30.)	공제회 회원, 임직원,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장례식장 빈소사용료 20%	- (신설 '13.07.22) - 삭제 (개정 '19.08.01)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3.02.15)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감면지침』 관련 질의/답변

< '23. 05. 08. >

질 의	답 변	비 고
1. 감면비율에 비급여항목은 포함되는 것이지요?	네, 감면비율에는 비급여항목 포함이며, 예외적용인 경우는 별도 표기했습니다.	
2. 직원감면 중 공단검진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 해 50%(비급여포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해당되나요?	공단검진에 해당하는 항목 중 위나 대장내시경 수면내시경 (비급여항목)할 때, 암검진 본인부담금 등에서 50% 감면 적용됩니다.	
3. 용역업체 직원의 건강검진 제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검진 중 비급여부분과 종합검진에 대해 감면제외입니다.	
4. 다자녀가정 감면대상자가 I Plus card만 제시 하면 안되나요?	다자녀가정 감면혜택 대상자가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병원 최초 내원시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병원과 계약한 사설구조대는 용역업체 직원범 위에 해당되는지요?	사설구조대는 병원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무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국가유공자 대상자는 타지역 국가유공자도 혜택이 되는지요?	네~ 국가유공자는 타지역 국가유공자도 혜택대상이 됩니다.	